심사보고서

2021년도 제6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1년도 제6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808

2021. 9. 3.(금)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 2021년 8월 25일

다. 회부일자 : 2021년 8월 27일

라. 상정일자 : 2021년 9월 3일

- 제39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 상정ㆍ의결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오세동 행정국장)

가. 제안사유

○ 음성 성본 외국인투자지역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은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선진기술 도입, 전·후방 산업 고도화등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음성군 대소면 음성 성본산업단지일부를 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며.

- 오창과학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신축은 청년친화형 산업단지로 지정된 오창과학산업단지에 청년 창업공간 제공, 창업·보육, 기술이전, 사업화 지원 등 전주기적 기업 혁신지원 플랫폼을 구축하여 혁신거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임.
- O 이를위해 공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제6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재산의 취득

《음성 성본 외국인투자지역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

- 위 치 : 음성군 성본 산업단지(금왕읍, 대소면) (G12 4, 5, 6)
- O 사업기간: 2021. 9. ~ 2022. 12.
- O 규 모: 165,290m²
 - ※ 충북도는 165,290㎡ 중 24%(39,669.6㎡)를 지분으로 취득
- O 사 업 비 : 400억원(국비 240, 도비 96, 군비 64)
 - ※ 조성원가 기준 부지매입비, 단가 241,999원/m²

《오창과학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신축》

- 위 치: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양청리 812-2번지(오창과학산업단지 내)
- O 사업기간 : 2021. ~ 2023.
- O 규 모 : 연면적 5,500m²(지상5층) / 부지면적 : 3,830.3m²(도유지)
- O 사 업 비 : 118.3억원(국비 38.3, 도비 80)
 - ※ 산업부(한국산업단지공단) 공모사업 선정('21.4.23.)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남범우)

- O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 O 첫째, 음성 성본 외국인투자지역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의 건은,
 - 외국인 투자기업을 적극 유치하여 첨단부품·소재분야 등의 산업 구조 고도화, 지역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 음성지역은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매우 좋고 유망 소재업체를 집중 유치하고 있으며, 반도체 집적단지인 평택,이천,청주의 중앙에 위치하여 외국인투자기업들의 관심이 높은 지역임.
 - 또한, 지난해부터 외국투자기업 2개사와 MOU을 체결하였고, 지 난 6월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 고시 하였음.
 - 저성장시대에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외국인투자기업 유치는 외국의 첨단기술 및 경영기법 도입으로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고, 양질의 고용창출은 물론 연관된 산업과의 시너지 효과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특별한 이견은 없음.
- O 둘째, 오창과학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신축의 건으로,
 - 오창과학산업단지는 과학기술 기반의 첨단산업을 바탕으로 충북 경제성장 및 산업고도화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며,
 - •[업체수] 오창산단 입주기업체 179개사 (전국 0.2%. 도내 5.1%)
 - •[생산액] 오창산단 총 생산액 12조522억원 (전국 0.8%, 도내 13.7%)
 - •[고 용] 오창산단 근로자 수 21,160명 (전국 0.6%, 도내 10.7%)
 - 또한, 청년친화형산단('18), 강소연구개발특구('19), 소부장특화단지('21) 지정 등 정부정책에 부합하는 첨단기술 중심의 4차산업 혁명을 선도하는 혁신성장의 메카로 부상하고 있음,

- 이에, 산업단지 혁신지원 전담 센터 필요성과 전주기적 혁신지원
 플랫폼 구축 등의 요구가 높아 한국산업단지공단의 '21년 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구축사업' 공모에 신청하여 지난4월에 선정되었음.
- 혁신지원센터 건립으로, 산단 내 R&D 성과 확산 및 업종고도화를 지원하기 위한 혁신지원기관을 전략적으로 집적화하고,
- 청년 창업·보육, 기술이전, 사업화 지원 등 모든 단계에서 기업 혁신지원 플랫폼을 구축하여 혁신거점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견은 없음.
-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 5. 토 론 요 지: "생략"
- 6.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O 「2021년도 제6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1년도 제6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 안 번 호 제 808 호 제출연월일 : 2021년 8월 25일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음성 성본 외국인투자지역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은 외국인 직접투자 유도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선진기술 도입, 전·후방 산업 고도화 등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음성군 대소면 음성 성본산업단지 일부를 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며,
- 오창과학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신축은 청년친화형 산업단지로 지정된 오창과학산업단지에 청년 창업공간 제공, 창업·보육, 기술이전, 사업화 지원 등 전주기적 기업 혁신지원 플랫폼을 구축하여 혁신거점 역할을 수 행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임
- 이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제6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 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 재산의 취득

≪음성 성본 외국인투자지역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

○ 위 치 : 음성군 성본 산업단지(금왕읍, 대소면) (G12 - 4, 5, 6)

○ 사업기간 : 2021. 9. ~ 2022. 12.

○ 규 모: 165,290 m²

※ 충북도는 165,290㎡ 중 **24%(39,669.6㎡)를 지분으로 취득**

○ 사 업 비 : 400억원(국비 240, **도비 96**, 군비 64)

※ 조성원가 기준 부지매입비, 단가 241,999원/m²

≪오창과학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신축≫

○ 위 치 :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양청리 812-2번지(오창과학산업단지 내)

○ 사업기간 : 2021. ~ 2023.

○ 규 모 : 연면적 5,500 m² (지상5층) ※ 부지면적 : 3,830.3 m² (도유지)

- 층별계획(안)

구 분	사용계획
1층	공유오피스, 회의실, 근린생활시설(카페) 등
2층	창업지원기관, 협업공간, 창업지원시설(시제품 제작 등)
3층	신산업 창출 혁신지원기관, SW-ICT 융합 지원기관 등
4~5층	기업지원기관(행정, 일자리 등), 창업·벤처·연구소 기업 입주공간 등

○ 사 업 비 : 118.3억원(국비 38.3, 도비 80)

※ 산업부(한국산업단지공단) 공모사업 선정('21. 4. 23.)

3. 2021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서 : 별첨

4. 관계법령 : 별첨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 제14조
-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8조

공유재산관리계획

2021년도 관리계획총괄표(14-1)

○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건, m², 천원)

구		브	당 초			변 경			합 계		
			건수	수 량	급	건수	수 량	급	건수	수 량	금 액
剂	계	토지	4	2,363,721.2	170,074,359	1	39,669.6	9,600,000	5	2,403,390.8	179,674,359
		건물	7	42,880.57	139,913,000	1	5,500	11,830,000	8	48,380.57	151,743,000
		기타									
	매 입	토지	3	1,364,161.2	166,574,359	1	39,669.6	9,600,000	4	1,403,830.8	176,174,359
		건물	7	42,880.57	139,913,000	1	5,500	11,830,000	8	48,380.57	151,743,000
		기타									
	교환	토지	1	999,560	3,500,000				1	999,560	3,500,000
		건물									
득		기타									
	7]	토지									
	타	건물									
		기타									
	계	토지	6	150,530.5	41,718,020				6	150,530.5	41,718,020
		건물									
		기타									
	매 각	토지	5	133,888.5	38,218,020				5	133,888.5	38,218,020
		건물									
처		기타									
	· 향 영	토지									
		건물									
		기타									
분	교	토지	1	16,642	3,500,000				1	16,642	3,500,000
	≥)	건물									
	환	기타									
	기	토지									
	타	건물 기타									
		1/14									

2021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14-2)

○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건, m², 천원)

일련	-) 17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전소유자	비고
번호	지목	소 재 지	면 적		^ /		ゼエリハ	
계	토지	1건	39,669.6	9,600,000				
	건물	1건	5,500	11,830,000				
	기타							
1	토지	음성군 성본산업단지 G12 - 4, 5, 6	39,669.6	9,600,000	′21. 9.	외국인투자지역조성	성본산업 단지(주)	매입
	건물							
	기타							
2	토지							
	건물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양청리 812-2번지	5,500	11,830,000	′21~′23	오창과학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신축	-	신축
	기타							

관계 법령 발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 · 특별자치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 · 군 · 구(자 치구를 말한다)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른다.
- ④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 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 가. 취득의 경우 : 20억원(시·군·자치구 의 경우에는 10억원)
 -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
 - ②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 1. 사업목적 및 용도
 - 2. 사업기간
 - 3. 소요예산
 - 4. 사업규모
 - 5. 기준가격 명세
 - 6. 계약방법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및 시행규칙】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 리계획은 도지사가 다음 연도 예산을 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결하기 전까지 충청북도의회(이하"도의 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 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 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도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 ②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 제14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의 작성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8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등의

- 1. 공유재산관리계획서(별지 제15호 서식)
- 2. 공유재산매매계약서(별지 제16호 서식)
- 3. 양여계약서(별지 제17호 서식)
- 4. 공유재산매수요구서(별지 제18호 서식)
- 5. 교환계약서 (별지 제19호 서식)